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14559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451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1455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액셀시어

담당변호사 김기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임태완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841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주권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3,2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0.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소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제1심판결 제4쪽 1번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9번째 줄 “별지와”를 “별지1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6번째 줄 “다)는” 뒤에 “2018. 8. 27.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2018. 9. 6. 회생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08)을 받았고, 회생계획에 따라 2018. 12.경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등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통주는 30분의 1로

병합되었다. 위 회생절차는 2019. 1. 10.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28. 파산신청을 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8번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 5조 위반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9.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통지를 하였다.

가) 원고는 외국법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주식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합법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회사가 가상화폐인 D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소프트캡 3백만 달러, 하드캡 2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1) 받을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였는데,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위반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원고는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고,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하여 피고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사실상 제한 또는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외국인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조 제4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취득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37조 제1항 제1호) 규정만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무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할 뿐이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주식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결국, 원고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양수도 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의 처분권이나 피고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가장납입을 하였다는 등 적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D 사업 관련 :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위반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는 가상 화폐 D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가상화폐인 D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소프트캡 3백만 달러, 하드캡 2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기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및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권 교부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권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권 교부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2)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10696(본소), 2007다10702(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별지1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에 ‘위 1, 2항에 따라 피고가 주권을 교부 받는 날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지위가 원고에서 피고로 이전되며, 양수도 대상 주식에 부여된 이익 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의결권 기타 양수도 대상 주식에 부여된 모든 권리가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문언을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권 교부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권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해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② 파산선고에 따라 해당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나, 해당법인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 즉 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해당법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실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0. 9. 23. 총 1,088주의 주권을 교부받았고,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20.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을 교부할 테니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주권 중 32,640주에 해당하는 3) 1,088주 만을 이행제공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행제공이라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권 전부에 해당하는 1,754주(=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주식 52,640주 / 30, 1주미만 버림4))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6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별지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본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아래 양수인, 양도인 사이에 2018년 7월 5일 체결되었다.

양수인(이하 "갑"이라 한다)

상 호 :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 4층
대표 이사 :

양도인(이하 "을"이라 한다)

성명:
주소: Los Altos, CA,

양수도 대상 주식 발행회사(이하 "해당회사"라고 한다)

상 호 :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표 이사 :

제2조(양수도의 목적물)

"갑"이 "을"로부터 양수하는 "해당회사"의 주식은 아래와 같다.

0. "해당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보통주식 200,000주

1.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0원

2. 양수도 대상 주식 내역

가.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보통주식 52,640주(26.32%)
나. 주당 양수도 가액 : 금 5,000원
다. 총 양수도 대금 : 현금 및 주식을 포함한 263,200,000원

제3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주권의 교부 및 발행)

1. "갑"은 제2조에 규정한 "을"의 보유 지분 20,000주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 중 현금 금1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해당하는 금액의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한다.

구분	현금	지급시기
선금	100,000,000원	계약후3일 이내
잔금	163,200,000원	계약후45일 이내

2. "갑"이 "을"에게 잔금 지급 시 "을"은 보유 지분 32,640주(11.69%)를 "갑"에게 교부한다.

3. 위 1,2항에 따라 "갑"이 주권을 교부 받는 날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해당회사"의 주주 지위가 "을"에서 "갑"으로 이전되며, 양수도 대상 주식에 부여된 이익 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의결권 기타 양수도 대상 주식에 부여된 모든 권리가 "갑"에게 이전된다.

제4조(보증 사항)

1. "을"은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고,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하여 "갑"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5조(특약 사항)

1. "갑"과 "을"의 가상 화폐 []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 사업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지분 매각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가수하며, 이는 별도 계약을 통하여 진행한다.

별지2

주권의 표시

발행회사 : 주식회사 C

종류 : 보통주

권면액 : 1주당 5,000원

수량 : 1,754주

1) 소프트캡과 하드캡은 간단히 말해 가상화폐 사업의 진행에 있어 최저액과 최고액을 의미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권 교부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해제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것으로 선택된다.

3) 주식은 소각, 액면분할, 병합 등의 변화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상주식의 변화가능성에 따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회생계획안(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기로 하였다.